

5. 주거취약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지원

저소득 주거취약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노후 주택 개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생활 보장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함

■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9. 1. 1. ~ 12. 31.
- 사업대상 :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약 4,800가구
- 사업내용 : 임차료 및 집수리 지원, 공공임대주택 입주지원
- 사업주체 : 마포구, 서울시, 한국토지주택공사(LH)
- 추진근거 :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

■ 세부추진계획

- 기초주거급여 지원
 - : 수급자 가구원수, 거주형태, 부담수준,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급
 - 임차수급자 : 임차급여 지급(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)

기준임대료 (단위 : 천원)	구 분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	1급지(서울) 기준	233	267	316	365	377	441

- 자기수급자 : 수선유지급여 지급(주택 노후도에 따른 집수리 지원)

구 분	경보수	중보수	대보수
지원금액(주기)	378만원(3년)	702만원(5년)	1,026만원(7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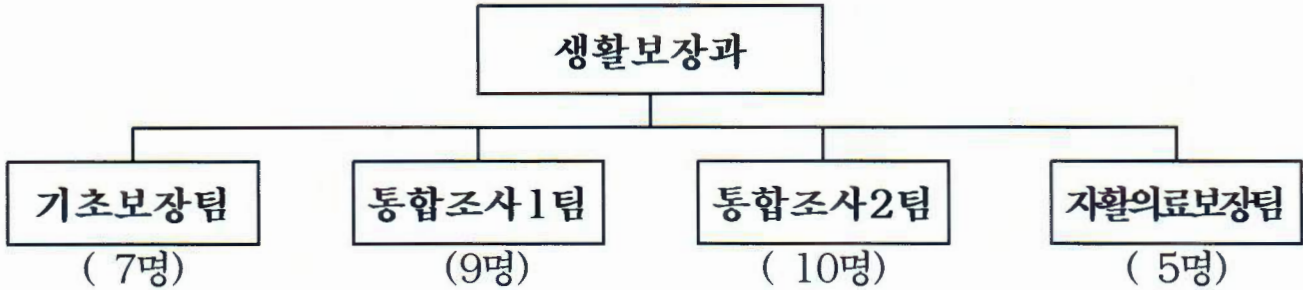
-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

구 분	지원절차	신청자격
공공임대주택 (영구임대, 매입임대, 전세임대, 주거취약지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치구 - 신청자격 및 방법 등 안내 신청 접수, 신청자 소득·재산 조회 ○ 시행사(LH·SH) - 입주자 선정·임대주택 공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순위 -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한부모 등 ○ 2순위 - 도시근로자 월평균 50% 이하 등

■ 소요예산 : 13,689,061천원 (국비60%, 시비28%, 구비12%)

생활보장과

【조 직】



【인력현황】

구 분	계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임기제	비고
정 원	32		1	6	7	11	7		
현 원	31		1	5	9	6	10		

※ 현원에 육아휴직 7명(7급 3명, 8급 3명, 9급 1명) 미포함

【시설현황】

- 마포지역자활센터(대표자: 창기정)
 - 소재지 : 마포구 상암동 1460번지
 - 면 적 : 788.31 m²

【복지급여 수급자 현황】

(2018.10.31.기준)

구분	계	국민기초생활보장				서울형 기 초	한부모 가 족	기초 연금	장애 연금	차상위 보 호	초중고 교육비	타법	아동 수당
		생계	의료	주거	교육								
세대	51,169	4,217	4,605	4,730	790	162	518	21,134	1,718	2,287	1,875	319	8,814
명	67,132	5,890	6,684	6,903	1,081	195	988	26,068	1,749	3,069	2,645	815	11,045

※ 타법의료급여(11종) : 북한이탈주민, 군입대자, 시설입소자, 주요무형문화재보유자, 이재민, 국가유공자, 국내입양아동, 광주민주화, 의사상 및 의사자의 유족, 행려환자, 기타

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

1.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급여 지원

최저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급여를 제공하여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을 지원하고 선정기준 다층화, 급여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수급자의 자립 유인

■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9. 1. 1. ~ 12. 31.
- 사업대상 및 선정 기준
 - 사업대상 :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4,342가구 20,558명

보장구분	선정기준	가구	인원(명)	비고(사업팀)
기초생계급여	중위소득 30% 이하	4,217	5,890	기초보장팀
기초의료급여	중위소득 40% 이하	4,605	6,684	자활의료보장팀
기초주거급여	중위소득 43% 이하	4,730	6,903	주거복지팀
기초교육급여	중위소득 50% 이하	790	1,081	서울서부교육청

■ 세부추진계획

- 맞춤형급여지원 기본계획 수립 : 2019. 1월
- 맞춤형급여 보장결정 : 연중
- 맞춤형급여(생계, 해산·장제급여) 지급 : 행복e음을 통한 적기 지급
 ※ 금전지급 원칙,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직접 입금
- 지역사회보호체계 강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급여 적정 지원

■ 소요예산 : 21,533,087천원

- 생 계 급 여 : 21,776,023천원(국비60%,시비28%,구비12%)
- 해산장제급여 : 155,064천원(국비60%,시비28%,구비12%)
- 교 육 급 여 : 102,000천원(시비100%)

2.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문적 통합조사 및 관리

가구특성에 맞는 전문적 통합조사·관리로 적절한 보장과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저소득주민의 사회안전망 확보

■ 사업개요

- 추진근거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및 사회복지통합업무 안내
- 사업기간 : 2019. 1. 1. ~ 12. 31.
- 사업대상 : 국민기초수급자 외 21개 사업 복지대상자 51,169세대 67,132명
(2018.10.31.기준)

구분	계	국민기초생활보장				서울형 기 초	한부모 가 족	기초 연금	장애 연금	차상위 보 호	초·중·고 교육비	타법 의료	아동 수당
		생계	의료	주거	교육								
세대	51,169	4,217	4,605	4,730	790	162	518	21,134	1,718	2,287	1,875	319	8,814
명	67,132	5,890	6,684	6,903	1,081	195	988	26,068	1,749	3,069	2,645	815	11,045

○ 사업내용

- 가구 특성을 고려한 보장별 신규신청 조사 및 자격변동 관리, 확인조사 실시
-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저소득층 권리구제 및 보장제외자 타법 적극 연계
- 통합조사·관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심층사례회의 운영

■ 세부추진계획

- 맞춤형 통합조사·관리를 위한 연간조사계획 수립 : 2019. 1월
- 보장별 신규신청 통합조사 및 확인조사, 인적정비, 자격변동 관리 : 연중
 -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확인조사 : 소득, 재산, 부양의무자 등
 - 중점관리대상자(부정수급자 등) 및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점관리
- 신청보장 제외 시 타급여 보장 서비스 적극 연계 : 연중
-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민간연계보장체계 운영 : 연중
-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저소득층 권리구제 활성화 : 연중
- 통합조사 담당직원 전문성 향상 및 역량강화 : 심층사례회의 및 학습동아리 운영

■ 소요예산 : 16,902천원

3.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

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우나 법적기준 미달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 발굴·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및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

■ 사업개요

- 사업기간: 2019. 1. 1. ~ 12. 31.
- 추진사업
 -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지원
 - 지원대상 :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
 - 지원내용 : 생계급여(맞춤형 생계급여의 1/2~1/3수준), 해산·장제급여
 -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
 - 지원대상 : 질병·실직·사고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 및 수급자
 - 지원내용 : 가구원별 특별생계비 및 공공요금 체납분 지원
 - 1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지원사업
 - 지원대상 : 건강보험료 월 1만원 이하 지역보험가입자 중 노인·장애인·한부모 세대
 - 지원내용 : 노인·장애인·한부모세대에 1만원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■ 세부추진계획

- 저소득주민 지원계획 수립 : 2019. 1월
- 대상자 발굴 및 지원 : 연중

■ 소요예산 : 640,000천원(구비 240,000천원, 시비 400,000천원)

- 서울형 기초보장사업 : 400,000천원(시비 100%)
-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 : 200,000천원(구비 100%)
- 1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: 40,000천원(구비 100%)

4. 사전예방·맞춤관리! 의료급여 지원사업

저소득 빈곤층의 맞춤형 의료급여 지원으로 생활안정 촉진 및 사례관리
활성화로 의료인식 개선·적정 의료 제공

■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9. 1. 1. ~ 12. 31.
- 사업대상 : 의료급여 수급자 4,924세대 7,499명
(1종 : 4,392명, 2종 : 2,292명, 군입대 및 타법 : 815명)
- 근거 : 의료급여법
- 사업내용
 - 맞춤형 의료급여 : 장애인보장구, 요양비,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
 - 본인부담 완화 : 건강생활유지비, 본인부담 보상,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등
 - 의료급여 사례관리 : 의료급여서비스 이용 교육 및 서비스 연계 등
 -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: 연장승인, 선택병·의원 지정 관리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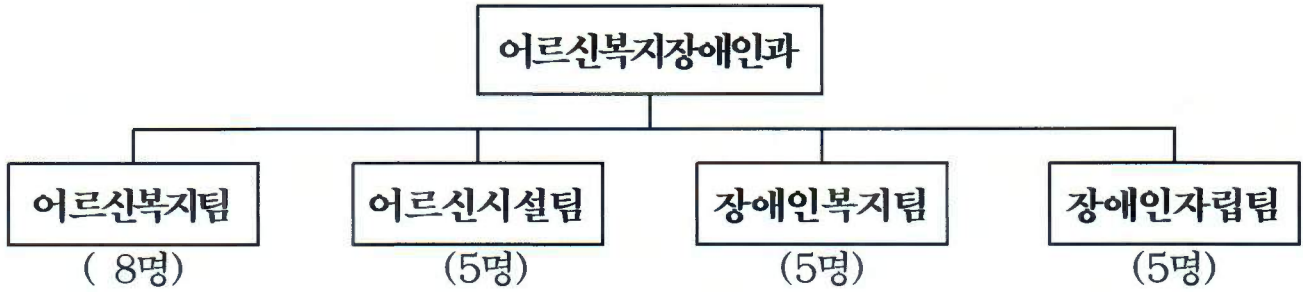
■ 세부추진계획

- 의료급여사업 운영계획 수립 : 2019.1월
- 의료급여서비스 이용교육 : 반기별
- 의료급여대상자 서비스 연계 : 연중
-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: 연중

■ 소요예산 : 461,144천원 (국비 50%, 시비 50%)

어르신복지장애인과

【조 직】



【인력현황】

구 분	계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임기제	비고
정 원	22		1	5	6	5	5		
현 원	22.5		1	6	5	3	7.5		

※ 9급 시간선택제 1명 포함, 육아휴직 1명(8급) • 질병휴직 1명(8급) 미포함

【노인복지시설현황】

계	여가복지시설				의료복지시설		재가복지 시 설	재가노인 자원센터	노인자녀 전담기관
	노 인 복지관	소규모 복지관	경로당	노인교실	노인요 양시설	노인공동 생활가정			
196	2	2	155	14	3	2	14	3	1

【장애인복지시설현황】

계	장애인거주시설	지역사회재활시설	장애인의료재활시설	장애인직업재활시설	개인운영시설	기타시설
23	5	7	1	4	3	3

【노인인구, 장애인 및 베이비부머 현황】 (2018. 10. 31.기준)

65세이상 노인			장애인			베이비부머(55년~63년생)		
계	남	여	계	남	여	계	남	여
48,157	20,219	27,938	13,225	7,501	5,724	43,178	20,615	22,563

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

1.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

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

■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9. 1월 ~ 12월
- 사업대상 :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
- 2018. 10. 31.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25,990명
- 선정기준액(2018년 기준) (*2019년 기준은 '18. 12월 통보 예정)

구분	선정기준액	기본공제
단독가구	131만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일반재산(주택) - 1억 3,500만원 ▪ 금융재산 - 2,000만원 ▪ 근로소득 - 84만원 공제 후 30% 추가공제
부부가구	209.6만원	

- 지급금액
 - 단독 수급/부부1인 수급 : 25,000원~250,000원
 - 부부2인 수급 : 1인당 25,000원~200,000원
- 지급방법 : 매월 1회(25일) 개인별 계좌이체
- 추진근거 : 기초연금법

■ 세부추진계획

- 기초연금 감액 제도 개선 및 지급 계획 수립 : 2019. 1월
- '2만원 단위감액' → '선정기준액 - 소득인정액' 으로 형평성 있는 기초연금 지급
- 기초연금 부당수급자에 대한 환수 : 2019. 1월~12월
- 기초연금 집중 홍보(어버이날행사, 경로행사 등) : 2019. 5월, 10월

■ 소요예산 : 76,588,893천원